내일을 위한 정부혁신
보다 나은 정부

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(이하 민특법) 제46조에 따른
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**변경신고**를 이행하지 않은
임대사업자에 대하여 **자진신고 기간**을 **운영**하고
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**과태료의 감면**을 시행합니다.

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이후에는, 전국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민특법 상 부여된 공적 의무(임대차계약 신고,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사용 포함)의 위반 여부에 대해 **관계기관 합동**으로 **점검**을 **실시**할 계획이며, **적발된 의무 위반자**는 **과태료 부과** 및 **세제혜택 환수 조치**됨을 사전 안내해 드리오니, 공적 의무사항을 확인하시어 위반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신고기간 **2020년 3월 2일(월) ~ 2020년 6월 30일(화)** 4개월 간 시행

신고대상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**개인 임대사업자**

신고항목 민특법 제46조에 따라, **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**

신고서류 자진신고서, 임대차계약 신고서, 표준임대차계약서

신고방법 **렌트홈**(http://www.renthome.go.kr) **온라인 신고접수** 또는 **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**(시·군·구청) **방문접수**

*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"임대차계약 미신고" 및 "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"에 한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

LH 렌트홈 콜센터 (시스템 031-719-0511, 제도 1670-8004)

※자세한 사항은 **렌트홈**(**http://www.renthome.go.kr**) 또는
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(시·군·구청)**로 문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국토교통부